

의견서

사 건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피 고 인 유 우 성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강압수사에 관하여

가. 인권 침해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에 대한 강압행위가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들은 원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스스로 모순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화교임을 부정하는 여동생 유가려의 가슴과 등에 "회령 화교 유가리"라고 써 붙이고 강제로 끌고 나가 합동신문센터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게 구경을 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은 유가려가 화교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인권침해적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태에 대하여 많은 탈북자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면서도 유가려가 대질을 원하였고 자신들은 대질을 위하여 유가려의 가슴과 등에 "회령 화교 유가리"라는 종이를 써 붙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수사관의 위와 같은 대질요구 증언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설사 대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령 화교 유가리”라고 강제로 써서 붙인 채 데리고 나간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한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의 3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신청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주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의 가슴과 등에 “회령 화교 유가리”라고 강제로 써붙이고 유가려를 다수의 탈북자들에게 공개시켜 신변안전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나. 반말 사용

국정원 수사관들 중 2012년 11월과 12월 중순까지 유가려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욕설과 구타를 자행하고 허위 진술을 취합하였던 소위 대머리 수사관은(가명 "오철수 ") 유가려에게 시종일관 반말을 사용하였다고 원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백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독방에 갇혀 언제 나갈 줄도 모르는 여동생을 향해 시종일관 반말로 수사를 진행하였음을 왜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머리 수사관은 유가려에 대한 반말 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아마도 대머리 수사관이 반말을 사용하며 탈북자들을 대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위 가.항의 행태 목격자처럼 대머리 수사관이 반말을 쓰면서 탈북자들을 다루는 것을 목격한 탈북자가 여럿 있을 것이라고 변호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5일 처음 만날 날부터 반말을 사용하였다는 대머리 수사관은 유가려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수사관이었습니다. 유가려는 인신구제절차이후 변호인과 2012년 11월과 12월 중순까지 자신을 조사하였던 대머리 수사관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대머리 수사관이 어떤 식으로 폭행을 하며 욕설을 하였는지 생생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대머리 수사관이 원심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유가려는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하면서 대머리 수사관의 증언이후 변호인에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만 막상 보니 또 무서워 정말 괴로웠다"

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머리 수사관은 시종일관 반말을 하면서 유가려가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책상에 걸터앉아 플라스틱물병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유가려를 벽 앞에 세워놓은 채 절대 앉지 못하게 하면서 “고개를 들어” “눈 맞춰” “벽에 기대지 마”등 고압적인 행태를 하다 화가 나면 머리를 손바닥으로 쳐서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찜 으면서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화교를 인정한 2012년 11월 5일에는 전기고문실에 데리고 가겠다는 유가려를 끌고 나가 전기고문실이라는 호실까지 끌고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대머리 수사관의 수사 방식은 지극히 비인권적인 수사방식으로 전기고문실의 존재여부를 모르는 유가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행태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자살 시도

유가려는 잠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서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 2012년 12월 9일 경 탁상시계를 깨서 손목을 그으려는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탁상시계의 재질이 유리가 아니어서 자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12년 12월 9일에 있었던 유가려의 자살시도에 대하여 대머리 수사관은 자살시도가 아니었으며 자해를 시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증언을 하였고 아줌마 수사관 역시 자살 시도 이후 유가려가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머리 수사관의 조사내용과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면 2012년 12월 9일 경은 이미 유가려가 오빠의 밀입북과 간첩행위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개략적으로 마친 시기입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여동생 유가려의 허위 자백 동기에 대하여 유가려가 보위부의 손아귀로부터 온가족이 벗어나고 싶어서(이러한 자백동기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만들어 지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에게 알려 준 것으로 실제 유가려의 임의성 있는 진술도 아닙니다.)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위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2012년 11월 말경 밀입북이나 간첩행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유가려가 2012년 12월 9일에 자살을 시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유가려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자신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서 욕설과 구타를 행사하며 잠을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죽고만 싶었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가려는 변호인에게 "아줌마 수사관과 대머리 수사관이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여 이불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나마 가장 행복했

고 아침에 눈을 뜬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하였습니다. 유가려는 어떤 날은 너무나 몸이 힘들어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는데도 수사관이 들어와 자신을 질질 끌고 나가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말대로 유가려의 자백 동기가 보위부의 손아귀로부터 온가족이 해방되는 것이었다면 이미 밀입북과 간첩행위와 관련한 모든 진술이 개략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유가려가 자살을 시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유가려로부터 허위로 대략적으로 받아낸 후 그 진술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에서 유가려에게 억지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하였고 구타와 욕설, 잠안재우기의 불법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를 도저히 견디지 못한 유가려는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가려는 2012년 12월 10일에 심리분석상담을 하였는데 이는 2012년 12월 9일에 유가려가 탁상시계를 깨가면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 때문이며 국정원 수사관들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가려는 2012년 12월 15일까지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으로부터 구타, 욕설,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행위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라. 독방 감금, 면회 및 접견 금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탈북자들이 수용되면 수용되는 탈북자들은 일단 여러 탈북자와 섞여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는 도중에 1인실로 불려가 1주일 이상 독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이후 별 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시 여러 탈북자와 섞여 합숙을 하고 추후 하나원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유가려는 처음 입소한 2012년 10월 30일부터 마지막인 2013년 4월 26일까지 독방생활을 하며 조사를 받습니다. 이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국정원에서 유가려의 입국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오후 6시 18분 유우성은 국정원 대북 파트 담당에게 "동생, 유광옥입니다. 상해에서 제주도로 오늘 오후 4시경 도착했습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6시 19분에

"저도 지금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 대북파트 담당은

"그래, 고생 많았겠다. 잘 될테니 너무 걱정 말고 또 연락하자꾸나"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성은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대북파트담당에게 여동생을 데리고 올 계획을 2012년 10월 30일 이전부터 수차례 얘기한 바 있었고 대북파트담당은 유우성에게 여동생을 데리고 오면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30일 여동생 유가려를 데리고 오자마자 여동생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다른 탈북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리를 받으면서 곧바로 독방에 감금되었고 화교여부에 대한 조사 및 밀입북과 간첩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동생 유가려는 6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아버지와 오빠 유우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반복하였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의 부탁을 무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과의 접견을 차단하고 변호인을 모략하였습니다. 심지어 2013년 3월 4일 안산에서 열린 증거보전절차에서 유가려가 몇 차례나 변호인과의 접견을 하겠다고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정원 수사관들은 접견을 위해 합동신문센터를 방문한 변호인과의 접견을 차단하였습니다.

마. 시.공간적 정보통제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를 독방에 감금하였으며 시간적인 정보도 통제 하였습니다. 대머리 수사관 스스로 유가려가 거주하는 독방에는 달력을 제공하지 않아 유가려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스스로는 날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가려는 대머리 수사관 등 국정원 수사관이 조사실에서 진술서를 작성시키면서 어떤 때는 실제 날짜와 다른 날짜를 기재하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머리 수사관은 유가려에게 언제 조사가 끝날 지, 언제까지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가려는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전혀 알지 못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된 것이고, 결국 국정원 직원들이 원하는 답을 해야만 조사가 끝난다는 것을 체험하고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국정원의 수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의 요약문과 본문 발췌록 일부와 2012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조사한 인권침해실태조사서를 첨부합니다.(증제67호의 1, 2, 3호-각 실태 조사서)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정보원합동신문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방조사 실태가 잘 드러나며 조사관들의 욕설 등 언어폭력, 폭행 등이 여전히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탈북자들은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보안각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치의 인권침해 조사결과는 실제 합동신문센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자료와 관련된 연구는 그나마 남한사회에 배출된 탈북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유가려는 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 신분 외에 유우성의 밀입북과 간첩행위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은 것을 고려해보면 훨씬 더 심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바.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강요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은 유가려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간첩죄보다 진술번복죄가 더 크다는 허위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진술서를 받았고 2012년 11월 27일 작성된 진술서 등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진술내용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유가려의 2012년 11월 27일자 진술서)

그러므로 유가려의 국정원에서의 진술과 그에 기반한 검찰 진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증언 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추후 수사기관의 기만과 회유에 대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사의 단서

국정원 수사관들의 원심 재판에서의 증언이나 이 사건 기록을 면면히 살펴보면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과 관련한 수사의 단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수사관들은 밀입북과 간첩행위에 대한 허위 진술을 유가려로부터 받아내고 있는 바 전술한 강압행위가 아니었다면 유가려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 화교 여부 -이탈지원법 위반과 관련하여

유우성에 대한 화교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국정원에서 2007년부터 다른 탈북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2009년 2010년 조사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2년 11월 경 합동신문센터내에도 유가려가 화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줌마 수사관(가명 "정영숙")은 원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동신문센터에 유가려가 오기전부터 유우성과 유가려가 남매지간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명백하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유우성이 화교인 것을 2007년도부터 국정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려 역시 화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이 유우성과 유가려가 남매지간임을 합동신문센터 이전부터 확인하였다면 유우성 남매에 대한 화교 여부는 쉽게 객관화하여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은 유가려를 폭행하고 욕설을 해가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심한 모욕을 줘가면서 화교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우성 남매가 화교임을 확인하였으면 이에 맞는 절차

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도 그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약 170여일 동안(유가려가 합동신문센터에 있었던 약 180일 중 초반 5일만 화교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밀입북 및 간첩과 관련한 조사를 강행하였고 오로지 유가려로부터 거짓 진술만을 확보하였습니다.

나. 밀입북

밀입북에 대한 수사의 단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머리 수사관은 원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11월 5일 자신이 유가려를 조사할 당시 마치 강력한 밀입북의 단서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증언을 하였으나 증언의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머리 수사관은 2012년 11월 유가려를 조사하면서 이미 유우성이 2009년과 2010년 밀입북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07. 8.시점에 목격자 진술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며 밀입북에 대한 수사 단서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것처럼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머리 수사관은 이미 2010년도에 유우성이 밀입북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의 밀입북과 관련하여 2007년 8월 시점에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 밀입북과 관련한 조사를 하였고 자신이 목격자라는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밀입북과 관련하여 2009년과 2010년도 조사에서 입수된 자료 외에 금번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은 2013년 1월 25일자, 2013년 2월 7일자 석해금의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유일합니다.

즉 2012년 11월 경 유우성의 밀입북을 유가려로부터 조사할 당시에는 2009년과 2010년도에 취득하였으나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서인국과 최순철의 진술이 밀입북과 관련한 유일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대머리 수사관은 밀입북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목격자에게 직접 확인을 한 것은 아니라며 유가려에게

"이런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다. 한 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였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머리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대머리 수사관은 객관적이고 새로운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검찰에서 믿을 수 없다고 결

정을 내린 서인국과 최순철의 진술을 언급해가면서 반말로 유가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입니다.

대머리 수사관은 2012년 11월 경 유가려를 조사하면서 유우성의 2007년 7-8월 경 밀입북을 증명해줄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머리 수사관은 오로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수집을 한 서인국과 최순철의 황당한 진술을 근거로 유가려를 뒤달하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3년 1월 23일 경 유우성의 북한 보위부 인입과 관련한 시점을 2007년도 여름에서 2006년도 6월 경으로 작위적으로 변경시킨 후 2007년도 인입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25일에 비로소 석해금이라는 여성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2013년 10월 30일 검찰은 석해금의 증언을 배척한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석해금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석해금은 진술서를 작성한 2013년 1월 25일 보다 3-4일 전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고 2013년 1월 25일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장황하게 사실과 다른 자의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원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석해금은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석해금 자신의 남편이 언제 교화소에 끌려가서 언제 나왔는지에 대하여 그야말로 황설수설하여 석해금 스스로 시각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석해금은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사가 증거기록 2337쪽을 가르키며 유우성이 맞냐고 묻자

"모습은 맞는데 얼굴 형태는 이 사진에서와 같이 살이 찌지는 않고 말랐었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하고 있으며

검사가 2351쪽을 제시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자

"이 사진의 머리가 멋있고, 제가 본 머리모양입니다."라고 거듭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해금은 2007년 7-8월 사이에 유우성이 중국에서 찍은 여러 사진들을(변호인 제출 중 15호증의 각 사진) 변호인들이 제시하자

"2007년도에 본 피고인의 모습은 이보다 살이 빠져있고 이렇게 살찐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머리 모양도 다르다고 확답을 합니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사진들은 유우성이 밀입북을 했다는 2007년도 7-8월에 찍은 사진들이어서 석해금이 정말 2007년 7-8월에 유우성을 북한에서 목격하였다면 자신이 목격한 모습과 유사하다는 증언을 해야함에도 석해금은 검사와 변호인의 양쪽 질문에 모두 2007년도 7-8월 경에는 변호인이 제시한 사진처럼 살찐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석해금이 그토록 자신있게 머리모양과 얼굴 윤곽을 강조하고 진술하였는데 석해금이 자신이 목격한 머리모양이라고 한 2351쪽의 머리모양 및 얼굴 윤곽과 2007년 여름, 유우성이 중국에서 찍은 머리모양, 그리고 얼굴 윤곽 등 살찐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 도저히 착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 목격 시간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더 오래 남고 정확할 것입니다. 석해금의 유우성의 인상에 대한 진술 내용은 2007년도 7-8월 유우성의 객관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석해금의 진술은 2004년도 탈북을 하기 이전 유우성이 북한에 거주할 때 찍은 사진들에 나타난 유우성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더불어 석해

금은 증언을 하면서 목격 당시 유우성이 중국으로 자주 왕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석해금이 유우성을 실제로 보았다면 유우성이 탈북을 하기 이전 북한에 살 때의 모습을 본 것일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에서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 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해당하는 석해금의 진술 신빙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뒤

집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해금의 진술이 2013년 1월말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므로 대머리 수사관은 2012년 11월에 유우성의 2007년도 여름 밀입북과 관련한 믿을만한 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서인국이나 최순철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진술을 토대로 유가려를 억박질렀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11월 중순 경 이미 유가려는 대머리 수사관의 강압 수사에 굴복하여 모두 15-16차례 유우성이 북한에 밀입북을 하였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이는 유우성의 여권 기록을 통째로 북한 밀입북과 연계시킨 대머리 수사관의 의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 간첩 행위

2012년 11월 경 유우성에 대한 간첩 수사의 단서 역시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가려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간첩행위와 관련한 조사가 전개되었을 뿐이며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년 12월 초에 ① 유우성의 유무선 전화, 인터넷 전화,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하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의 사용 내역을 모두 확보하였고 ② 2012년 12월 4일부터 2013년 2월 2일까지는 유우성의 유무선 전화에 대한 감청을 실시하였습니다.(2009년과 2010년도에도 국정원에서는 유우성에 대한 통

신 내역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유우성은 2012년 10월 30일 국정원 대북파트 담당에게 여동생 유가려가 입국한 사실을 알린 후 대북파트 담당의 말대로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으며 유가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년 12월 초 감청을 실시함과 동시에 기존 존재하는 유우성의 모든 통신거래내역도 샅샅이 조사를 하였음에도 단 한 건도 유우성의 간첩행위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우성의 컴퓨터가 포맷이 되었으므로 간첩행위를 의심할 수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유우성의 인터넷 포탈 사이트 이메일에 현재도 잔존하고 있는 탈북자와 남한 젊은이의 명단이 섞여 있는 자료를 유우성의 간첩행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와 유우성이 QQ메신저로 연락을 하는 사진(이 사진은 유우성이 중국에 나온 여동생과 오랜만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메신저를 주고받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유우성은 간첩행위에 사용되는 메신저 통신 과정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간첩이라는 것이 됩니

다.) 등을 간첩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정원의 주장은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져 도저히 간첩행위와 관련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습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우성에 대한 밀입북이나 간첩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개시할 당시 수사의 단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2012년 11월 중순경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로부터 오빠에 대한 밀입북과 간첩행위에 대한 허위 자백을 모두 받아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나 검사는 자백의 동기운운하면서 보위부의 손아귀를 벗어나기 위하여 유가려가 자백을 하여 밀입북이나 간첩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유가려의 자백과 보위부의 손아귀와는 전혀 무관함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짐에 따라 유가려의 허위 자백은 국정원 수사관들의 강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짜깁기 식 진술 유도 및 강요

국정원과 검찰은 기존 공안 사건 경험으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하우는 금번 사건에서는 안타깝게도 유가려의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유가려는 북한보위부에서 3일간 인입교육을 받고 간첩지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메시지를 통해 탈북자 정보를 전달받은 후 이를 USB에 저장하여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간 사실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첩 인입과정과 지령을 받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우성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유가려의 진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으며 국정원 수사관들의 유도나 암시 등 방향제시가 없었으며 도저히 자발적인 진술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만강 도강 방법이나 USB 사용 관계 등은 유가려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며 실제 유가려는 처음 국정원 수사관이 USB가 아닌 팩스나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USB로 귀결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도강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려는 화교로서 두만강을 도강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며 두만강을 도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만강 도강 지점이나 방법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는데 수사관들은 도강을 하여 탈북한 탈

북자들의 기존 진술을 토대로 도강 방법 등을 미리 알려주면서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유가려에게 도강 방법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4.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가려에 대한 국정원 수사관들의 조사는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 잠안재우기 등 인권침해적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러한 심리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유가려는 검찰 조사와 증거보전절차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유가려의 수사단계와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11월 경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우성의 밀입북과 간첩행위에 대한 단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11월 중순 이미 유가려로부터 밀입북 15-16차례, 간첩행위 3차례 등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진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가려에 대한 국정원 수사관들의 강압행위가 충분히 추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국정원 수사관들의 작위적인 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이 흐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할수록 더 명확하게 조작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 변호인들은 각 공소사실의 허구성과 수사관들 증언의 문제점, 검찰 측 증인들의 허위 증언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증 자 료

- 1.증제67호증의 1 2005년도 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보고서 요약문
- 1.증제67호증의 2 2005년도 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보고서 본문 발췌록
- 1.증제67호증의 3 2012년도 경기도가정여성연구원 인권침해 실태조사서

2013. 11. 1.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 승 봉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귀중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문

사 건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피 고 인 유 우 성

2013. 11. 1.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귀중

증
제
호
증
1
호

75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5.

연구수행기관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책임자 박 호 성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규 영 (서강대 교수)
김 영 수 (서강대 교수)
진 희 관 (인제대 교수)
Prof. Manfred Wilke (Freie Universität Berlin)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약문 >

I.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탈북자에 관한 여러 문제점 가운데 탈북자 입국과정, 교육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풍부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첫째,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초기 수용시설과 남한사회 내로 '연착륙'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보완 및 대책마련은 언젠가 폭발할 개연성이 있는 잠재적인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에 대한 체계적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둘째, 기존 탈북자 초기 수용시설인 <정부합동조사기관>, <하나원> 혹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정착교육과정과 정착생활 이후에 어떤 인권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안마련은 장차 도래할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적·민족적 과제중 하나이다.

셋째, 비교 사례로서 동독이탈자의 서독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문제와 그 해결 방안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혹은 시사점을 정리하여 그 성과의 일부를 현재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술적 차원에서 기존 탈북자 전문가들 외에도 국내의 각계 전문가들과 국외 특히 독일 현지전문가들과 협동과제로 연구하여

이론적 대안을 모색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한 문헌분석방법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500명의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50명의 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 제기와 그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탈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학술적 차원에서 제안의 형식으로 종합·정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독일의 역사적 경험 사례와 우리 사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대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자로 함께 참여한 독일 학자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기초와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추출하게 될 것이다.

II. 설문 및 면접 결과 분석

1. 설문 결과 및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주요 정착지의 탈북자 500명으로 설정하였다. 수도권 및 기타 지역(충청, 경상, 전라 지역 등)의 샘플링을 인구비례에 따라 약 60%: 40%로 구분하여 300명: 200명의 비율로 대상 설정하여 직접·방문조사를

시도하였다. 다만 지방의 경우 실제 거주자를 찾기 쉽지 않은 문제점과 아울러 여러 물리적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제 조사비율은 지방거주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서울이 61.2%이며 수도권(인천, 경기)을 포함하면 75.1%에 이르고 있고 지방이 24.9%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이 설문문항은 총 89 문항으로 세부분항까지 100문항에 이르고 있다. 설문은 세 번의 탈북자행사에서 약 250명 가량이 직접 조사에 의해 진행되었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개별·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1) 인구학적 조사

응답자의 입국년도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응답자 중 2000년 이후 입국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성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최근 여성 입국자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의 비율이 남성 203명(42.2%)과 여성 278명(57.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이 더 많다. 또한 연령에서는 20~40대가 가장 많은 73.5%를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12.3%에 이르고 있다.

탈북자의 출생지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는 역시 함경도(함북 65.3%, 함남 12.1%) 지역이 77.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국경지대인 평안북도(3.5%), 자강도(0.9%), 량강도(3.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북한에서 종사했던 직업은 생산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고, 학력은 약 80%가 고등중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하였으며, 대학을 다녔거나 졸업한 수치도 14.5%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의 제3국 체류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2년에

서 많게는 7년까지 체류하는 경우가 각각 10% 내외(8~14%)로 나타나고 있으며, 1년 이내의 경우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의 거주지는 유효 응답자중 61.2%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75.1%,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이 12.7%이며, 그 밖의 지역은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지방 거주 탈북자들이 주소지는 지방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수도권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에 탈북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가 33%에 이르러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에 먼저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탈북자의 생활형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46.7%의 응답자가 '못산다'고 답변했고, 잘 살고 있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분명히 북한에서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다. 그럼에도 못산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남에서 누리는 생활 수준이 북한에서 누린 생활 수준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음에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입국 초기 조사과정에 관한 질문

입국 초기 정부합동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탈북자들의 65%가량은 건달만 했고(편안했다 19.6%, 건달만했다 46.0%), 과반수인 51.5%는 친절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사례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첫째, 조사 및 독방생활 등의 필요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포심을 느낀 경우가 38.5%(매우 그렇

다 7.9%, 약간 그랬다 30.6%)이며, 조사기간이 힘들었다는 응답이 26.1%에 이르고 있다.

둘째, 독방생활 기간 동안 TV, 신문 등 매체를 접하는 일은 70~80% 내외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방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68.3%에 이르러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자가 친절했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3%에 이르고 있지만 특히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경우가 응답자 중 115명으로 25.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탈북자가 조사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례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20명(4.1%)이 얻어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경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빈도는 17.9%(82명)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의 경우 여성 대상자에 대해 남성조사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유효응답 55명 중 39명(70.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말을 들은 경우가 8.0%(39명), 그러한 행동을 당한 경우가 2.1%(10명)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일부 부당한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28.8%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경험자 140명중 대부분인 103명(73.6%)이 불쾌했다는 답을 보이고 있다.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하여 더욱 불쾌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것이 정부합동조사기관의 조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기관에서 이뤄진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탈북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무섭다는 반응이 상당한 비율(38.5%)에 달하고, 매우 힘들었다(26.1%)는 답변이 편안했다(2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설보호과정에 관한 질문

하나원 교육기간 중 겪었던 생활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친절도를 묻는 질문에 약 91.8%가 그렇거나(59.8%), 보통이다(32%)라는 응답을 보였고, 교육기간에 편안했다 39.0%, 견딜만했다 47.2% 등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탈북자들이 하나원 직원으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가 12.1%로 나타났다. 또한 아주 극소수에 달하는 사례(1.0%)이지만, 하나원 직원으로부터 일어맞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나타났다. 다만, 하나원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사(1.5%)나 행동(0.2%)은 극소수에 그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주지 생활에 관한 질문

첫째, 탈북자들은 직장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자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의견이 67.6% (매우 그렇다 38.1%, 약간 그렇다 29.5%)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고, 소득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50.5%, 승진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52.7%,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38.6%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탈북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유효응답자 153명중 30명으로 약 20%에 이르고 있다.

셋째, 탈북자들의 거주지 보호활동을 묻는 질문에서는 선변보호 담당관의 밤늦은 연락 등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례는 20%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29.9%(132명)에 이르고 있다.

넷째, 방송 및 보도로 인한 탈북자들의 피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효응답자 234명중 5.6%인 13명만이 항의를 했으며, 항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원인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 경우가 20.4%(유효응답 157명중 32명)로 나타났다.

다섯째, 설문조사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0회 이상 조사에 응한 응답자가 31.5%로 나타나고 있으며, 40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도 2.9%(13명)로 조사되고 있다.

여섯째, 정치참여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질문에서는 발언의 자유에 대해서 대부분인 75.7%(352명)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에 16.2%가 응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여행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해외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효응답자의 32.1%인 134명이 해외여행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해외여행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입국 초기의 경우 북수여권을 받지 못하고 단수여권을 받는 경우가 절반(49.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종교생활을 묻는 질문에서는 유효응답자 430명중 72.8% 313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90.1%인 282명이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조사되어(불교 4.8%/ 15명, 천주교 5.1%/ 16명) 종교 선택의 편중 혹은 불균형이 두드러진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종교를 갖게 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3국에 머물면서 종교를 가진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합동조사기관 또는 하나원에서 38.2%(각각 25.7%, 12.5%)로 나타났다.

2. 심층 면접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은 모두 50명이며, 주소지 지역별로는 서울 40명(80%), 인천 4명, 대전 2명, 경기·충남·광주·전북 각 1명이

면접에 응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위해 크게 10가지의 질문 문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 둘째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 셋째 국내에서 생활수준, 넷째 국내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 다섯째 적응교육(정부합동조사기관, 하나원) 기간 발생한 인권문제, 여섯째 거주지에서 겪는 인권문제, 일곱째 학교·직장에서 겪는 인권문제, 여덟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아홉째 종교와 여행의 자유, 열 번째 집회·결사의 자유, 끝으로 건의사항 및 하고 싶은 말을 청취하였다.

면접 결과 크게 두드러지는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설반 가량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수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생각해보적이었다고 답변했다.

2) 인권개선 사항

탈북자들은 인권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무엇보다도 탈북자를 바라보는 남한 국민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로서 취업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탈북자들은 국내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대안학교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탈북자들이 정착지원금 제도의 변화 이후 비록 합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탈북 중개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해야 할 금액 마련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3)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이유

우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직장에서 차별과 급여의 차이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셋째, 직장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정착지원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목돈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 탈북자를 바라보는 남한 국민의 시선과 멸시가 가장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4) 가장 심한 인권침해 사례

가장 심했던 인권침해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입국 초기 조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겪은 심한 말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생활 중 한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욕을 듣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으로 인해 싸움이 벌어질 경우 원인을 확인하기보다 누가 더 나눴는가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으며, 진학문제에 있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능력 면에서 어렵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5) 적응교육기간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

우선 정부합동조사기관의 독방생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둘째, 조사내용들 중 반복적이거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

하여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넷째, 하나원의 교육내용에 대해 상당수의 면접자들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6) 거주지 배정 이후의 인권문제

우선 담당형사의 역할에 대해 '과잉' 친절의 사례와 인력부족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시차를 두고 탈북한 가족간의 거주지가 달라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셋째, 이웃들 중 가족을 남겨두고 탈북한 사실에 대해 비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동사무소의 은행 계좌추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취업 후에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생활보조금의 지속적인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임시직을 전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7) 언론, 집회, 결사, 여행, 종교의 자유

언론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 권리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때로 선교 목적으로 탈북자를 찾는 교회의 잦은 방문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종교 집회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쟁점

1. 탈북자 인권의 개념과 내용

탈북자의 인권은 무엇보다 인권 보편성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성문헌법이나 여러 가지 선언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 진정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인권과 관련된 제반 가치에 대한 규정과 내용 나아가 제도적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가치, 평화, 질서, 복지, 정의와 조화문제 등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인권논의는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뚜렷한 논의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원칙적으로 북한 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보편적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차적 논의의 출발점은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1948년 UN 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66년에 UN 총회가 채택하여 1976년에 발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일명 B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일명 A규약) 등 3개를 들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조 1항은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지는데,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이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모든 인민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

자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조야말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의 핵심내용이다.

2. 탈북자의 인권 의식

탈북자들의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 대상자 50명에게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47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에 대해 빈도에 따른 순위로 구분해보면,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성향의 특징을 일별해 볼 수 있다.

탈북자 50명(심층면담)의 인권관 순위구분

구분		조항	인원수(비율)
1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	D1, D2, E2, E3, C2, C3	23명(48.9%)
2	언론과 표현의 자유	D19, C19	6명(12.8%)
	사회보장 (최소한의 생계보장)	D22, E9	6명(12.8%)
3	자유와 안전의 권리	D3, C9	3명(6.4%)
4	자결권(self-determination)	E1, C1	2명(4.3%)
5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D9, C9	1명(2.1%)
	사생활, 가족, 가정의 보호	D12, C17	1명(2.1%)
	건강권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D25, E12	1명(2.1%)
'잘 모르겠다'		-	4명(8.5%)
총 계		-	50명(100%)

* 무응답자(3명) 제외

실제 조사에 의한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없는 평등권을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취업 및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문화, 언어차이, 선입견 등으로 인해 느끼는 사회적 차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반면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둘째,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누리지 못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에 대한 의견표현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셋째, 사회보장 또는 최소생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넷째,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통제체제 하의 경험에 대한 반작용일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탈북자들이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적응해가면서 자신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관점이나 인권관이 점차 변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탈북자들의 인권관은 북한이나 남한에서 자신이 겪은 체험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북한체제와 비교하여 남한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였으며, 정부합동조사기관에 비해서는 하나원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자신들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쟁점

1)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입국 초기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두드러지는 것은 우선 독방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초기 조사단계에서 독방에는

7~10일 가장 수용되고 있는데, 이 때 탈북자중 상당수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독방생활에 대한 설명 부재, 감시자의 냉대, 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의 불편, 운동 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조사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우선 죄인취급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계속되는 반복질문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담당 조사관이 북한 및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테면 북한의 경우 인민학교를 4년에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이 왜 4년까지만 다녔냐고 따져 묻는 사례 등이다.

셋째, 성적 모욕에 대한 것이다(입국 시기는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의 대상자들에게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젊은 여성의 경우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젊은 남성에게서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하나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하나원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우선 탈북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교육내용이 현실과 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무시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래어, 전철타는 법, 시장보는 법, 컴퓨터 사용방법 등을 비롯해서 실질적 내용을 배우기를 지적하고 있으며, 전임 탈북자들이 실제 겪었던 경험을 가르쳐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둘째, 탈북자의 연령을 고려치 않고 '예의 없이' 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의 연령을 고려치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탈북자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먼저 입국한 탈북자 가족들과의 면회를 허용해줄기를 희망하는 언급이 있다. 더욱이 하나원 외부로 외출을 할 때에도 면회를 못하게 하며, 음식을 보내올 경우에도 전달해주지 않고 버리는 사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3) 정착지 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정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착금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2005년부터 정착금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인당 지원비가 매월 30만원 가량이며, 2인 가족의 경우 50여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 초기 정착금을 브로커에게 모두 주고 나서 생활고가 극심해진 사례도 있다. 생활고로 인해 자녀교육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파급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둘째, 취업난 외에도 임금채불과 차별, 직장 내에서 비난과 따돌림 사례 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의 사기 행각에 빠져 최소한의 정착금마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셋째, 이혼과 혼인의 문제이다. 탈북자들은 일정기간이 되기 전까지 이혼이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입국 초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도 헤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담당경찰관의 과잉보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밖에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개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며, 동사무

소의 계좌 추적 문제 및 여권의 본적란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여권 본적란에는 하나원 주소로 기입되어 중국 여행시 중국 공안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다.

IV.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 인권 문제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독일이 분단되거나 통일된 이후 서독에 정착한 동독 출신 독일인에 대한 인권신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독인과 같이 동등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경우처럼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일단 관계 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초 조사과정 및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탈동독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통합기관을 거치지 않고, 관련 법률과 시행세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내국인으로 대우받아 왔다.

동시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동독으로부터 탈주내지 이주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항상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분단 시기에 서독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에 유용한 요소로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법률적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탈주자의 행렬이 과생될 때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서독에서 - 이미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 동독출신 탈주자/이주자들은 독일인으로 인정하는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요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1945년

부터 1990년까지 독일에서 동·서독간 탈주/이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동시에 인권문제는 단지 동독의 입장에서 이주를 방해하고자 인권문제가 대대적으로 훼손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V. 탈북자 인권 문제의 개선 방안

1. 탈북자 정착 지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현재까지 국내 입국 탈북자의 한국사회적응과 정착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정부가 맡아 왔다. 이러한 탈북자의 정착지원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체계내의 혼선이다. 현재 탈북자에 관한 주무부서는 통일부로 되어 있지만, 탈북자의 정착지원 업무는 통일부내 정착지원과, 하나위, 탈북자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되어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초기 정착지원, 적응 교육,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서 상호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탈북자의 정착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이다. 탈북자의 정착지원 수준은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아온 국가유공자, 기초생계보호대상자, 귀환 납북자, 사할린귀국동포 등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탈북자의 수효가 늘어갈수록 여타 정부 지원 대상자들의 반발과 한국사회 내 저소득층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탈북자 지원체계로서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의 협력체계가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탈북자 지원체계에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유기적 협력방안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다섯째, 탈북자 정착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탈북자 정착지원에 대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과 구체적 지원방식체계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탈북자 정착지원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통일부의 특정 부서에서 전담해서 다룰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탈북자의 발생부터 국내 입국까지 업무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담당하더라도 탈북자의 국내 정착지원 업무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협력기구를 만들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한국사회에 무리 없이 정착하게 되는 만큼, 탈북자의 인권수준도 신장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이처럼 국내 입국 탈북자의 인권보장문제는 정부와 민간차원을 망라한 국내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독일의 사례연구에서도 향후 국내 탈북자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동독 출신 탈주자/이주자가 서독에 입국하는 순간 이미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기존 독일인과 동등한 포괄적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는 국내 거주 이주자들을 인권개선의 차원보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국내 탈북자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전제로 하는, 즉 국내 탈북자의 인권개선 분야에 한정하는 미시적 접근보다 통일 한국으로 귀환하려는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거시적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들은 탈주하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서

독 사회에 대한 실정을 이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독일의 장기적 안정성과 일관성의 유지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입국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정부합동조사기관 및 하나원의 입소 및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과 능력배양 기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하나원이라는 유일한 교육기관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국내에 입국하면 일차 기초조사 뒤에 독일 방식과 같이 각 지방에도 이러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이들의 주생활근거지가 되는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적응훈련을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지방분산 및 지방분권이라는 현 시대의 흐름에도 합당하다.

셋째, 국내 탈북자의 수용과 지원이 각 지방으로 분산되는 경우 제정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일정 부분에 한해서 각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방정부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이주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고 책임의식을 제고시켜야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탈북자 인권 문제의 단계별 개선 방안

1) 탈북자 조사 단계의 인권 개선 방안

현재의 조사절차와 조사방식 및 조사담당자에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조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북한의 보위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인식하지만, 감옥생활의 연장과 같았으며 죄인을 대하는 듯한 조사과정의 처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요컨대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동안 입국 탈북자에 대한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침해사례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조치는 시급한 과제이다. 더욱이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탈북자에 대한 담당조사관의 폭력 행사 및 강압적인 행위 등이 발생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2) 탈북자 교육 단계의 인권 개선 방안

국내 입국 탈북자가 하나원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인권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하나원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이다. 극소수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하나원에서 교육적이지 못한 언행은 일체 사라져야 한다.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동안 발생하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받는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나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과정을 피교육자인 탈북자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나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2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교육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교육하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내용의 재조정시 교육시간의 분배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좀더 실질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현재 교육대상자들을 성인, 청소년, 여성 등으로 분리하여 교육시키고 있으나, 이를 좀더 세분하여 탈북자의 과거 교육수준과 향후 진로를 감안한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 외에도, 장기적으로 하나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대상자인 탈북자를 정부의 기관인 하나원이 주관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교육을 시키고, 정부는 사후 지도 혹은 감독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통일부 산하 교육시설인 하나원 한 곳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탈북자 정착 단계의 인권 개선 방안

국내 입국 탈북자의 정착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착금 지원방식과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연관된 문제이다. 2005년부터 정착금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 비해 대단히 높은 물가와 생활고로 인해 자녀교육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착지원제도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탈북자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로서 취업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자신의 취업 가능성이 몹시 낮고, 취업 이후에도 부당한 대우나 차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취업난과 임금체불 및 직장 내에서 따돌림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취업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이 이루어질 경우 탈북자임을 숨기면서 생활하기보다 미리 밝혀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개도와 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탈북자들의 학습권과 연관된 문제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대안학교의 설립을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요인들도 중첩되어 있겠지만, 학교생활에서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생활하는 경우가 48%(초기 포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특히 교육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탈북출신 학생들이 취학할 경우에 대해 해당 학교에 지도·권고안을 보내어 이들이 생활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탈북자에 대한 담당경찰관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들로부터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탈북자들은 방송매체 및 언론의 보도에 관하여 일정 부분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탈북자들이 사생활보호에 관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고 언론매체의 고유한 역할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간의 조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섯째, 탈북자들은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대부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에도 16.2%가 응답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시선과 멸시가 가장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의 변화 없이 인권상황의 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간절한 호소에 진지하게 정청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본 연구는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조사단계와 교육단계 및 정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실을 정리해 보면,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인권 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의식을 묻는 질문에서 탈북자의 절반 가량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답변하며, 적지 않은 수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인권관은 처음에 소극적 차원에서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차원으로 이행하는 추세를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처럼 앞으로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절대 다수가 아닌 일부 극소수에 의해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일지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났듯이, 이들 관계자들 외에 일반 국민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니,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시선과 멸시가 가장 힘들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여는 시금석, 그것은 한국사회에 현재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해매는 탈북자들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한국사회의 도움만으로 탈북자가 정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평생을 지낸 구성원들조차도 제대로 정착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입국 탈북자의 정착 지원제도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탈북자 스스로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점에서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은 명약 관화하다. 분단 시대의 뼈아픈 산물인 탈북자들이 겪는 수난은 그들만의 비극이 아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 남북한 동포가 함께 사는 연습이자 재결합을 위한 훈련과정일 수도 있다. 비록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은 여기에 있다.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본문 중 발췌록

사 건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피 고 인 유 우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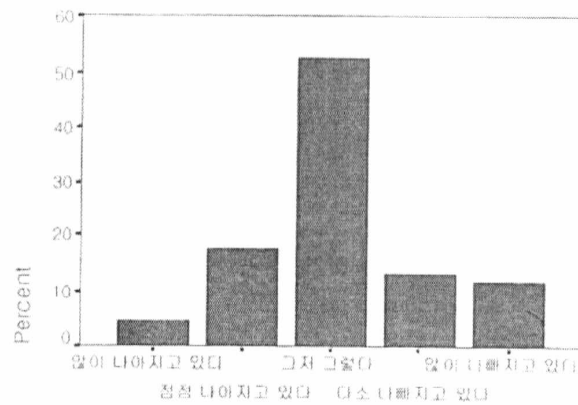
2013. 11. 1.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귀중

75
증제.호증2호

<그림 2-16> 선생님의 경제사정은 최근 어떻게 변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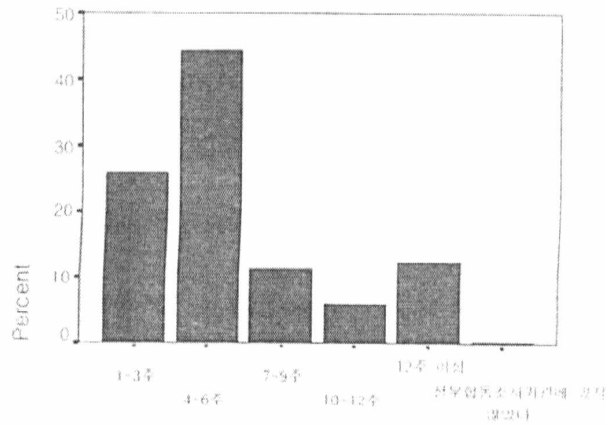
2) 입국초기 조사과정에 관한 질문

입국 초기 조사과정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기간 동안 탈북자들의 65% 가량은 견딜만 했고(편안했다 19.6%, 견딜만했다 46.0%), 과반수인 51.5%는 견절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입국 초기 탈북자들의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정부합동조사기관 등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사례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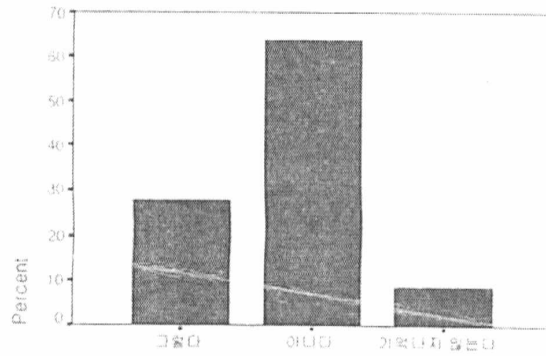
첫째, 조사 및 독방생활 등의 필요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63.8%, 조사이유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9%, 독방생활에 대해 설명이 없는 경우가 69.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이 대체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입국 초기 탈북자들

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포심을 느낀 경우가 38.5%(매우 그렇다 7.9%, 약간 그렇다 30.6%)이며, 조사기간이 힘들었다는 응답이 26.1%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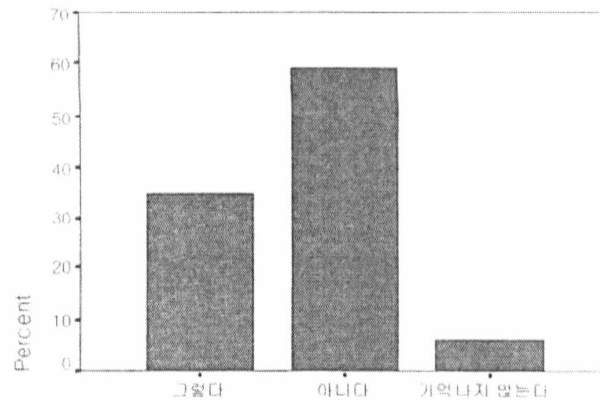
<그림 2-17>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얼마동안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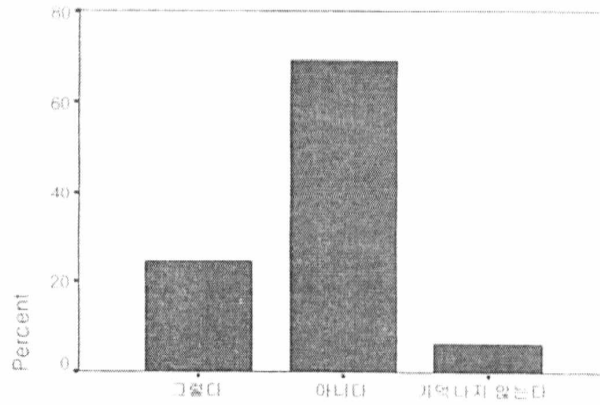
<그림 2-18>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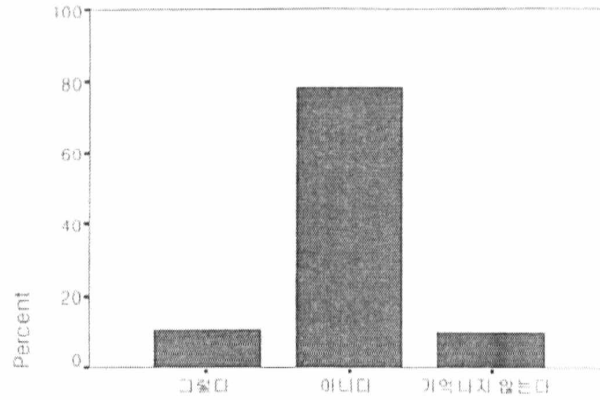
<그림 2-19>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리 설명해 주었다.



<그림 2-20> 독방생활을 하게 된다고 미리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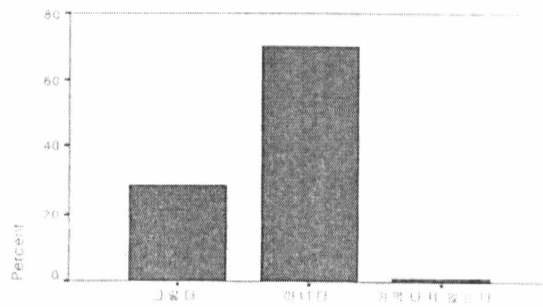


<그림 2-21> 대답하기 곤란한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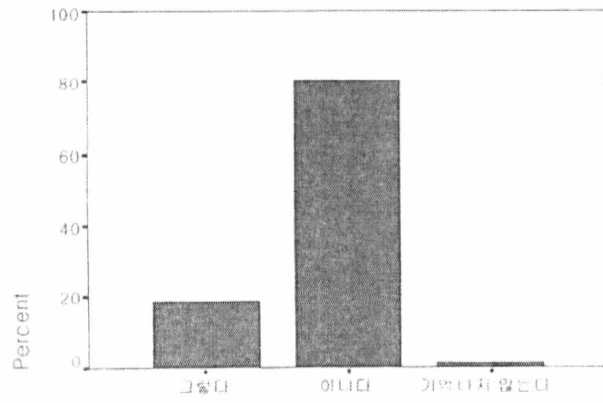


둘째, 독방생활 기간 동안 TV, 신문 등 매체를 접하는 일은 70~80% 내외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방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68.3%에 이르러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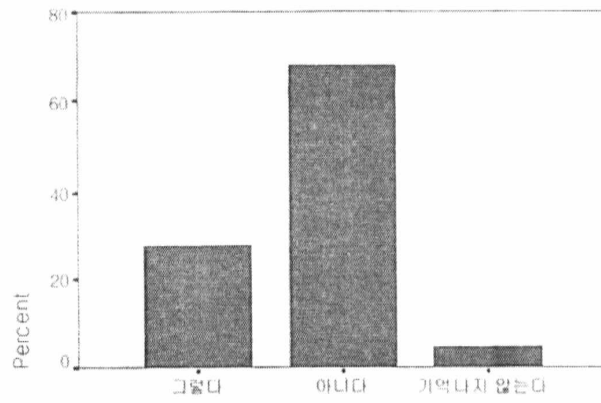
<그림 2-22> TV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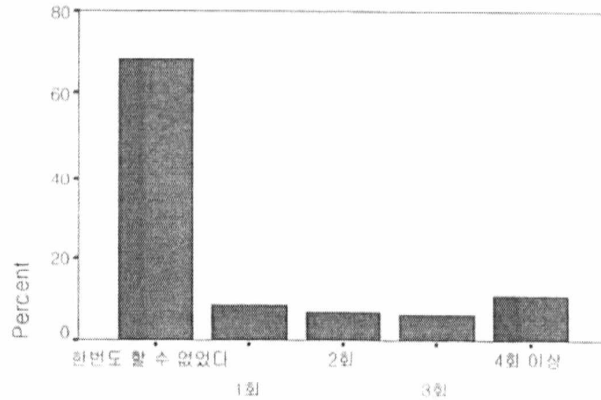
<그림 2-23> 신문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24> 책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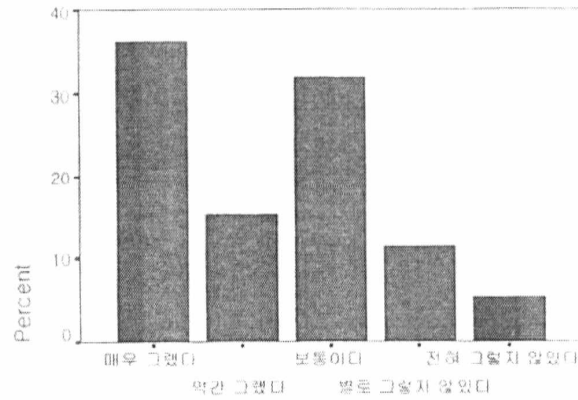
<그림 2-25> 독방생활 기간 동안 산책이나 운동을 몇 번 할 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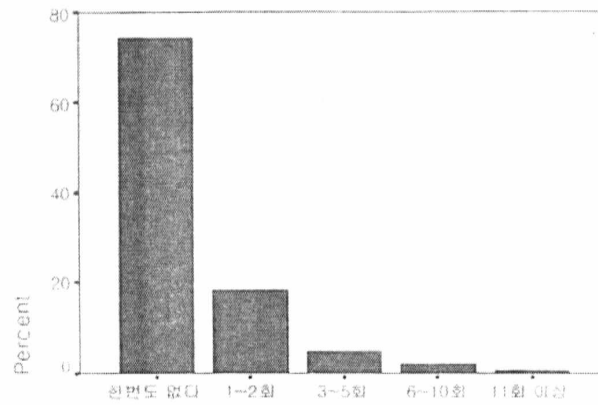
셋째, 조사자가 친절했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3%에 이르고 있지만 부정적 의견도 16.3%에 이르고 있다. 특히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경우가 응답자 중 115명으로 25.5%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 대한 응답에서 ‘갑자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탈북자가 유효 응답자 132명 중 59명(44.7%)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탈북자가 조사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례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20명(4.1%)이 얻어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6> 담당선생님의 말투나 태도는 친절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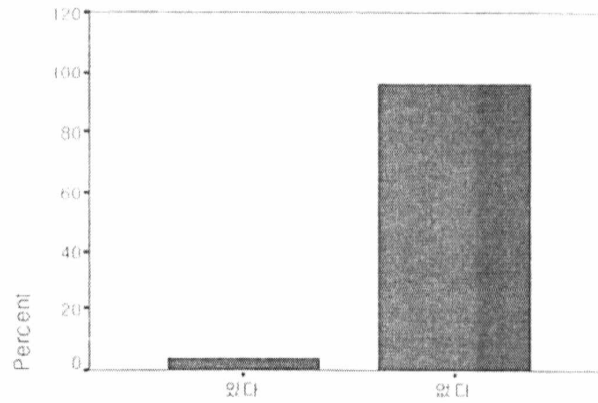
<그림 2-27> 조사기간 동안 폭언이나 욕설 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표 2-2> 직원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내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28	5.6	21.2	21.2
직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하려고 겁주기 위해	59	11.8	44.7	65.9
직원들이 다른 일로 가 나서, 나에게 문을 풀기 위해	7	1.4	5.3	71.2
내가 잘못을 하건 안건 습관적으로 욕설을 분뉘기였다	11	2.2	8.3	79.5
나는 아무 잘못도 하 않았는데, 무엇 때문	27	5.4	20.5	100.0
사 모르겠다				
Total	132	26.4	100.0	
Missing 99.00	368	73.6		
Total	500	100.0		

<그림 2-28> 입국 초기 조사기간 동안 언어맞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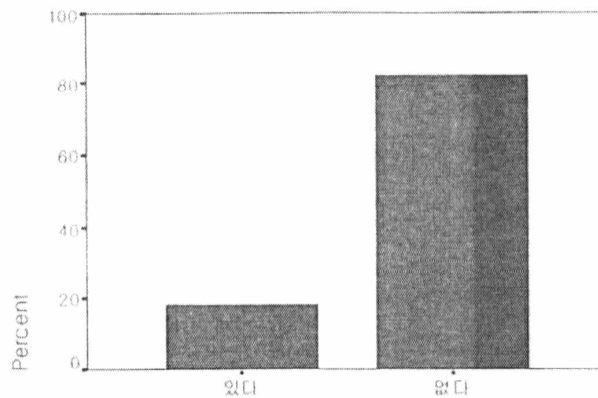


넷째, 성경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빈도는 17.9%(82명)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의 경우 여성 대상자에 대해 남성조사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유효응답 55명 중 39명(70.9%)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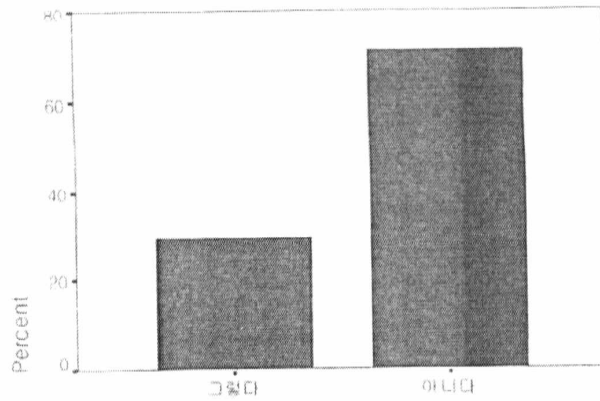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들은 여성조사관이 조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인 문제와 같은 경우 남성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가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말을 들은 경우가 8.0%(39명), 그러한 행동을 당한 경우가 2.1%(10명)로 답변함으로써 일부 부당한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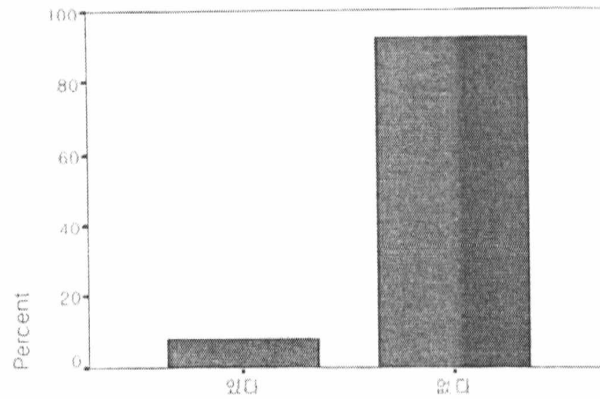
<그림 2-29> 성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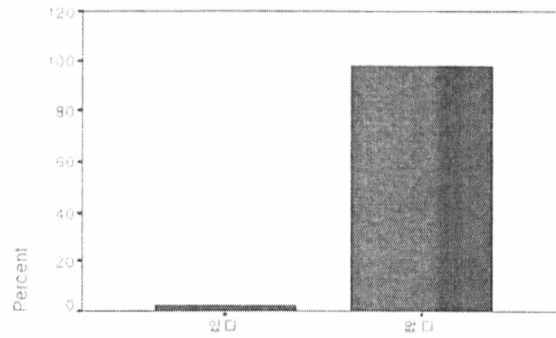
<그림 2-30> 성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여성의 경우 여성담당관이 조사했습니까?



<그림 2-31>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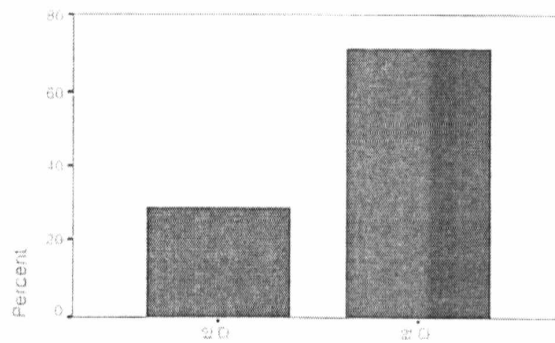


<그림 2-32>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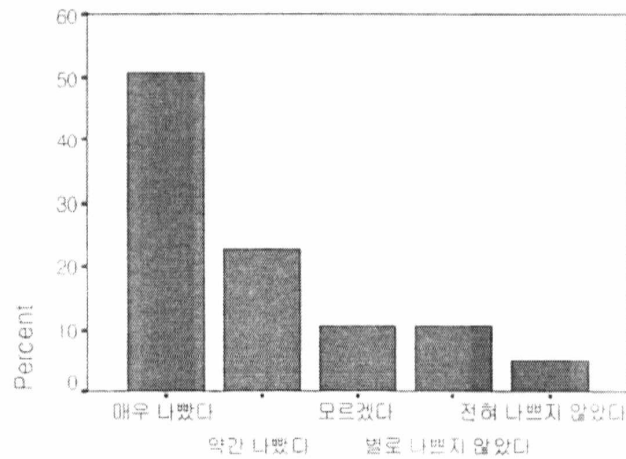


다섯째,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28.8%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경험자 140명중 대부분인 103명(73.6%)이 불쾌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하여 더욱 불쾌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3>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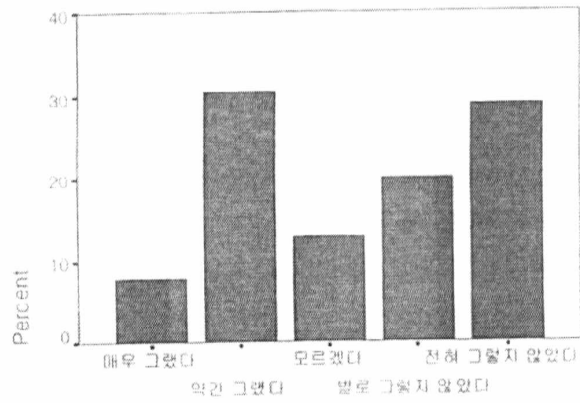


<그림 2-34>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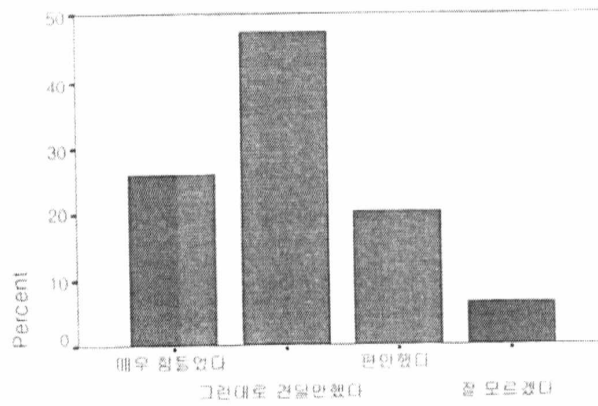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것이 정부합동조사기관의 조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기관에서 이뤄진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탈북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무섭다는 반응이 상당한 비율(38.5%)에 달하고, 매우 힘들었다(26.1%)는 답변이 편안했다(20.2%)는 답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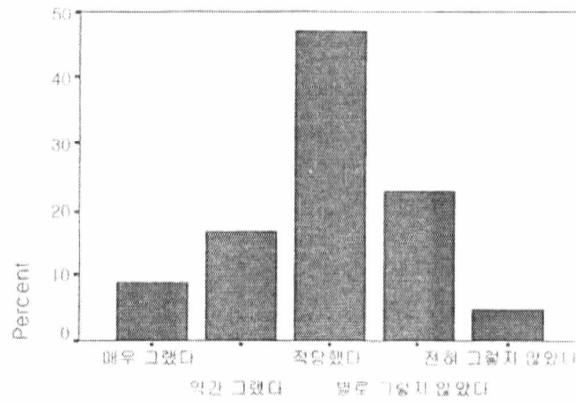
<그림 2-35> 조사기간 동안 위협을 느끼거나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림 2-36> 조사기간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림 2-37> 조사 기간은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3) 시설보호과정에 관한 질문

탈북자는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조사과정을 거친 후,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하나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교육기간 중 겪었던 생활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친절도를 묻는 질문에 약 91.8%가 그렇거나(59.8%), 보통이다(32%)라는 응답을 보였고, 교육기간에 편안했다 39.0%, 견딜만했다 47.2% 등으로 대체로 하나원에서 지내는 생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증
제
75
호
증
3
호

2012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 • •
발 간 사

경기도에는 2012년 현재 5,7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4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웃에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북한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학계나 기업에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운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였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적지 않다고 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다시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더 늘어간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체제와 문화를 수용하고 이에 동화되는 데에 있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받아들인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건 새로운 구성원들이 성공적으로 그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가 이들의 적응을 돕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배려와 관심, 열린 마음이 없이는 어떠한 제도와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부적응을 일으키게 하는 남한 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존감을 침해하는 것임을 밝히고,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통일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400명의 북한출신 주민과 심층면접에 응해주신 열 여섯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설문조사자로도 성실히 역할을 맡아주신 여덟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탈북여성과 남한 여성의 평화를 위한 모임인 '조각보'의 고문 윤명선목사와 김숙임대표씨도 조사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유익한 자문을 주신 홍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차성주 한국통일교육협회 사무총장,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실의 김현아 선생님, 경기도 화성시청 자지행정과 박영란 선생님의 도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본 연구를 총괄하며 가장 많이 고민하고 애쓴 안태윤 연구책임자와 황해동 위촉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시고 완성된 초고를 꼼꼼히 읽고 자세한 논평을 해주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수석연구위원,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이상구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한 사회가 북한출신 주민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9월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박 영 순

〈표 3-16〉 입국 대기시설 성별 분리 수용 여부

구분	분리 수용	혼합 수용	사례수
전체	87.7	12.3	358

(단위: %, 명)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볼 때, 제3국에서의 대기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심신이 힘든 상태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열대지방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이 문제는 여성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지만, 의료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10명 중 거의 4명에 가까운 수가 기간이 너무 길어 힘들었음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8.1%가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 국정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통일부 등 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부 종합합동심문소에 수용되어 합동신문을 받는다.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개 1주일 정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독방에 수용되어 국정원 직원 1명과 대면하여 지속적으로 며칠 간 조사를 받는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퇴소할 때까지 다른 입국자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약 2~3개월간 지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입국 후 국정원 주도의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및 인권침해의 유형과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 종합합동심문소에 입소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설명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에 그쳤다. 또 독방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된다고 미리 설명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였다. 마지막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설명해주었다고 답한 비율은 23.3%에 그쳐 가장 적었다 (〈표 3-17〉 참조).

〈표 3-17〉 국정원 직원의 안내 여부

(단위 :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사례수
조사기간에 대한 안내	42.8	57.3	400
독방생활에 대한 안내	50.3	49.8	400
묵비권에 대한 안내	23.3	76.8	400

국정원 조사기간 동안 직원의 언행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는가에 대해서 43.1%가 느꼈다고 응답했고, 2.7점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0.3%가 여성은 43.9%가 느꼈다고 답하여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당시 10대였던 집단에서 공포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매우 많이 느꼈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에서 많았다. 이는 아동, 청소년들이 단독으로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추의외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표 3-18〉 참조).

〈표 3-18〉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 언행에 의한 공포감 정도

(단위 : % 명 점)

구분	공포감 정도				사례수	평균 ¹⁾	I/F 검증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꼈다	매우 많이 느꼈다				
전체	25.8	31.3	31.8	11.3	400	2.72	-	
성별	남성	24.0	35.6	28.8	11.5	104	2.72	0.075
	여성	26.4	29.7	32.8	11.1	296	2.71	
입국시 연령	10대	23.5	29.4	33.3	13.7	51	2.63	0.419
	20대	22.1	41.4	26.2	10.3	145	2.75	
	30대	32.0	22.0	36.0	10.0	100	2.76	
	40대	30.2	24.5	35.8	9.4	53	2.75	
	50대 이상	20.8	33.3	25.0	20.8	24	2.54	

주) 1) 4점 척도(1: 전혀 느끼지 않았다, 2: 별로 느끼지 않았다, 3: 약간 느꼈다, 4: 매우 많이 느꼈다)의 평균값임.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이 무시하거나 반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3.3%가 있다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9.8%로 여성 20.9%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에서 많았다(〈표 3-19〉 참조).

〈표 3-19〉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의 무례한 언어

(단위: %, 명)

구분		없다	있다	사례수	χ^2
전체		76.8	23.3	400	-
성별	남성	70.2	29.8	93	3.887
	여성	79.1	20.9	307	
입국시 연령	10대	78.4	21.6	51	5.245
	20대	71.7	28.3	145	
	30대	78.0	22.0	100	
	40대	86.8	13.2	53	
	50대 이상	75.0	25.0	24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의 폭언이나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16.8%가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2.1%, 여성이 14.9%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에서 많았다(〈표 3-20〉 참조). 이는 국정원 조사기간 중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무례한 말과 폭언, 욕설을 경험하고, 20대가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조사기간 중 20대 남성이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의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폭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자에 대한 조사가 더 엄중하거나, 혹은 고학력자일수록 거친 말이나 욕설에 민감하다고 할 수도 있다.

〈표 3-20〉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의 폭언

(단위 : % 명)

구분		없다	있다	사례수
전체		83.3	16.8	400
성별	남성	77.9	22.1	104
	여성	85.1	14.9	296
입국시 연령	10대	90.2	9.8	51
	20대	81.4	18.6	145
	30대	83.0	17.0	100
	40대	86.8	13.2	53
	50대 이상	83.3	16.7	24
북한 최종 학력	인민학교 졸업 이하	87.0	13.0	23
	고등중 졸업 이하	83.6	16.4	286
	전문대졸	82.6	17.4	46
	대졸 이상	81.4	18.6	43

조사기간 중 직원의 폭언을 들었을 때 어떠한 대응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9.4%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였다. 나머지 90.6%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 참조).

〈표 3-21〉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의 폭언 시 대응 행동

(단위 : % 명)

구분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사례수
전체		90.6	9.4	64
성별	남성	87.0	13.0	23
	여성	92.7	7.3	41
입국시 연령	10대	50.0	50.0	4
	20대	96.0	4.0	25
	30대	88.2	11.8	17
	40대	85.7	14.3	7
	50대 이상	100.0	0.0	4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0.8%가 있었다고 답했다. 폭행을 당한 응답자는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이었다(〈표 3-22〉 참조).

〈표 3-22〉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의 폭행 여부

(단위 : % 명)

구분		없다	있다	사례수
전체		99.3	0.8	400
성별	남성	97.1	2.9	104
	여성	100.0	0.0	296
입국시 연령	10대	100.0	0.0	51
	20대	98.6	1.4	145
	30대	99.0	1.0	100
	40대	100.0	0.0	53
	50대 이상	100.0	0.0	24

국정원 조사기간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13.8%가 있다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가장 많았다. 북한에서의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거짓말탐지기 조사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자에 대한 조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나타낸다(〈표 3-23〉 참조).

〈표 3-23〉 국정원 조사기간 중 거짓말탐지기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분		없다	있다	사례수
전체		86.3	13.8	400
성별	남성	81.7	18.3	104
	여성	87.8	12.3	296
입국시 연령	10대	82.4	17.6	51
	20대	91.7	8.3	145
	30대	84.0	16.0	100
	40대	77.4	22.6	53
	50대 이상	83.3	16.7	24
북한 최종 학력	인민학교 졸업 이하	91.3	8.7	23
	고등중 졸업 이하	88.5	11.5	296
	전문대졸	84.8	15.2	46
	대졸 이상	74.4	25.6	43

거짓말 탐지기 사용 시 느낌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다가 43.6%, 약간 불쾌했다가 18.2%로 61.8%가 불쾌했다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 보다 불쾌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표 3-24) 참조).

〈표 3-24〉 거짓말탐지기 사용 시 불쾌감 정도

(단위 : %, 명)

구분	전혀 불쾌하지 않음	별로 불쾌하지 않음	약간 불쾌	매우 불쾌	사례수
전체	9.1	29.1	18.2	43.6	55
남성	15.8	31.6	36.8	15.8	19
여성	5.6	27.8	8.3	58.3	36

국정원 조사 시 심야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6.3%가 그런 적이 있다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 보다 약간 더 많았다(표 3-25) 참조).

〈표 3-25〉 국정원 조사 시 심야 취조 경험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런 적 없다	별로 그런 적 없다	기름 그랬다	자주 그랬다	사례수
전체	70.8	23.0	6.0	0.3	400
남성	60.6	31.7	7.7	0.0	104
여성	74.3	19.9	5.4	0.3	296

국정원 조사기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상보다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15.6%, 예상보다 좀 길었으나 견딜만 했다가 38.8%, 힘들지 않았다가 45.7%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힘들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에서 많았다(표 3-26) 참조).

〈표 3-26〉 국정원 조사기간 적절성

(단위 : % 명)

구분		예상보다 짧아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예상한 정도여서 힘들지 않았다	예상보다 좀 길었으나 견딜만 했다	예상보다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	사례수
전체		8.7	37.0	38.8	15.6	392
성별	남성	5.9	28.7	47.5	17.8	101
	여성	9.6	39.9	35.7	14.8	291
입국시 연령	10대	14.0	28.0	46.0	12.0	50
	20대	8.5	36.2	39.0	16.3	141
	30대	8.2	40.2	36.1	15.5	97
	40대	9.4	37.7	39.6	13.2	53
	50대 이상	8.3	50.0	25.0	16.7	24

국정원 조사기간 중 몸이 아플 때 의사나 간호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2.8%가 받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받을 수 없었다는 응답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표 3-27) 참조).

〈표 3-27〉 국정원 조사기간 중 의료서비스 가능성

(단위 : % 명)

구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충분하지는 않으나 받을 수 있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모름	사례수
전체	2.8	34.8	59.0	3.5	400
남성	0.0	30.4	55.8	4.8	104
여성	3.7	33.1	60.1	3.0	296

국정원 조사기간 중 직원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3.8%가 있었다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녀가 거의 동일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10대, 40대, 20대의 순으로 많았다(표 3-28) 참조).

〈표 3-28〉 국정원 조사기간 중 성적 수치심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분		없다	있다	사례수
전체		96.3	3.8	400
성별	남성	96.2	3.8	104
	여성	96.3	3.7	296
입국시 연령	10대	98.0	2.0	51
	20대	99.3	0.7	145
	30대	92.0	8.0	100
	40대	98.1	1.9	53
	50대 이상	91.7	8.3	24

직원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해서 86.7%가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응답은 13.3%(2명)로 나타났다. 항의한 2명 중 상대방 직원의 반응은 사과하고 시정했다와 오히려 위협하고 협박했다가 각각 1명씩이었다(〈표 3-29〉 참조).

〈표 3-29〉 국정원 조사기간 중 성적 수치심 경험시 대응 행동

(단위 : % 명)

구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사례수
전체	86.7	13.3	15
남성	100.0	0.0	4
여성	81.8	18.2	11

국정원 조사시 전반적인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44.6%가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무시한다는 응답은 남성 56.3%, 여성 40.5%로 나타나 남성이 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무시한다는 반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30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가장 낮은 인민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 무시한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착기간별로 보면, 정착기간이 오래될수록 무시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 과거의 조사과정이 지금 보다 더 인권침해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표 3-30〉 참조).

〈표 3-30〉 국정원 직원의 전반적 태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존중	약간 존중	약간 무시	너무 무시	사례수	평균 ¹⁾	t/F검증
전체		13.1	42.3	38.3	6.3	397	2.38	-
성별	남성	9.7	34.0	45.6	10.7	103	2.57	2.94 ^{**}
	여성	14.3	45.2	35.7	4.8	294	2.31	
입국 시 연령	10대	17.6	37.3	39.2	5.9	51	2.33	0.56
	20대	12.6	43.4	37.8	6.3	143	2.38	
	30대	13.1	46.5	33.3	7.1	99	2.34	
	40대	17.0	43.4	25.8	3.8	53	2.26	
	50대 이상	4.2	41.7	50.0	4.2	24	2.54	
북한 최종 학력	인민학교 졸업 이하	17.4	30.4	39.1	13.0	23	2.48	2.25
	고등중 졸업 이하	11.3	44.0	38.7	6.0	284	2.39	
	전문대졸	15.6	26.7	53.3	4.4	45	2.47	
	대졸 이상	20.9	53.5	20.9	4.7	43	2.09	
남한 정착 기간	3년 이하	18.5	41.9	35.5	4.0	124	2.25 a	3.07 ^{**}
	4년~7년	10.0	45.7	35.7	8.6	140	2.43 ab	
	8년 이상	9.9	38.0	45.5	6.6	121	2.49 b	

¹⁾p<.05; ²⁾p<.01.

주: 1) 4점 척도(1 매우 존중, 2 약간 존중, 3 약간 무시, 4 너무 무시)의 평균값임.

2) 사후검증(Duncan)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표시함.

국정원 조사 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복수 응답으로 묻은 결과, 조사기간 단축이 6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독방투숙 시 TV시청 허용이 57.7%, 가족과의 면담 허용이 51.0%, 조사담당자의 거친 언행이 17.5%의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가족과의 면담 허

용은 여성이 더 많았고, 조사담당자의 거친 언행은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10대에서는 가족과의 면담 허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가족과 떨어져 독방에서 조사받는 과정이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표 3-31) 참조).

〈표 3-31〉 국정원 조사 과정의 개선 사항(복수응답)

(단위 : % 명)

구분		조사담당자의 거친 언행	조사기간 단축	가족과의 면담허용	독방 투숙 시 TV사정 허용	기타	사례수
전체		17.5	60.1	51.0	57.7	4.1	358
성별	남성	22.8	66.3	44.6	53.5	5.0	101
	여성	15.7	57.8	53.3	59.2	3.8	287
입국 시 연령	10대	17.6	52.9	60.8	58.8	2.0	51
	20대	18.4	61.8	52.2	57.4	2.2	136
	30대	16.2	64.6	44.4	61.6	6.1	99
	40대	13.5	57.7	46.2	53.8	7.7	52
	50대 이상	16.7	45.8	54.2	66.7	8.3	24
북한 최종 학력	인민학교 졸업 이하	26.1	73.9	47.8	39.1	4.3	23
	고등중 졸업 이하	17.3	61.2	50.7	59.4	3.2	278
	전문대졸	14.0	53.5	55.8	65.1	7.0	43
	대졸 이상	16.7	50.0	50.0	52.4	7.1	42

5. 하나원에서의 인권침해

북한이탈주민은 정부 합동신문에서 조사를 거쳐 보호가 결정되면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되어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며, 동시에 가족관계등록과 임대주택알선 등 정착을 위한 준비를 지원받는다. 이 절에서는 12주간의 하나원 입소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떤 형태의 침해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